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

## 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7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16일  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김길영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혜지, 민병주, 박영한,  
신복자, 심미경, 이효원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18명)

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, 공립·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시설(체육시설)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,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.
-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)이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,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~2조 신설).

- 나. 교육감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(안 제3조 신설).
- 다. 교육감의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함(안 제4조 신설).
- 라.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5조 신설).
- 마.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,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 신설).
- 바. 교육감이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(안 제7조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
- 다. 기타 : 없음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·사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 체육시설”이란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
2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
3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
4.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)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②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표창)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,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